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의2서식] <개정 2018. 1. 18.>

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사업장 규모	대지: ㎡, 건물: ㎡	
사업장 소재지	주소 (전화번호:)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30,000원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